

재입국허가제도 안내

정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대응하여 ‘20. 6. 1. 부로 재입국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19에 맞서 국민 및 체류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,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적용대상

○ ‘20. 6. 1.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 ※재입국허가 없이 출국 시 외국인등록 말소

※ 단, 아래 ①, ②, ③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국 후 재입국 가능

① 외교(A-1), 공무(A-2), 협정(A-3) 및 재외동포(F-4) 체류자격 소지자

② ‘20.5.31. 이전 출국한 장기체류외국인(출국 후 재입국허가 면제기간 내 입국하는 경우에 한함)

③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

※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의 재입국허가 신청은 별도 안내문 참조

2. 신청방법 및 허가절차

○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(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신청 대행 허용)

※ 단, 가족의 사망 등 긴급한 사유로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출국 당일 공항만에서 신청 가능 (긴급한 사유가 아닐 경우 불허될 수 있으며, 민원혼잡으로 인하여 탑승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)

○ 단수 재입국허가 발급

- 허가기간 내 1회 대한민국에 재입국할 수 있으며, 그 허가기간은 체류기간 및 여권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장 1년까지 부여

○ 수수료 : 3만원 (온라인 접수 시 2만4천8백원)

3. 제출서류

○ 재입국허가 신청 사유서 (붙임1)

※ 사유를 뒷받침하는 서류 제출 가능

○ 재입국 시 유의사항 안내 및 확인 동의서 (붙임2)

붙임1
재입국허가 신청 사유서 [한·영·중]

재입국허가 신청 사유서 Application For Reentry Permit, 申请再入境许可的情况说明				
신 청 인 Applicant/ 申请人	성 명 Name In Full/姓名			
	외국인등록번호 Registration Number 韩国外国人登记证号码		국 적 Nationality/国 籍	
	여권 번호 Passport No./ 护照号码		여권 유효기간 Passport Validity/ 护照有效期	
	재입국 예정일 Date Of Reentry/ 拟再入境日期		체류자격 Visa Status/ 在韩滞留资格	
	방문예정 국가 Country to Visit/ 拟前往国家 (地区)	1.	2.	3.
동 반 자 Dependent / 偕行人	성 명 Name In Full/姓名	생년 월일 Date Of Birth/ 出生日期	관 계 Relation/ 与申请人关系	비 고 Remarks/备注
* 신청사유(Reason For Application , 申请理由)				
2022년 (year/年) 월(month/月) 일 (day/日) (서명 또는 인) (signature or seal/签或章)				

재입국 시 유의사항 안내 및 확인 동의서
NOTES FOR RE-ENTRY AND CONSENT FOR CONFIRMATION

- 아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,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7조의2에 따라 외국인등록 말소 처리합니다.

Re-entry permission shall not be issued unless you provide consent to the following terms. Leaving the Republic of Korea (ROK) without re-entry permission will result in cancellation of Alien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7-2 of the Immigration Act.

- 재입국자는 현지 출발일 전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.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탑승이 차단되거나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
All persons who wish to re-enter the ROK shall carry and present result of Negative PCR COVID-19 test executed (the sample collected) and issued within 48 hours of the departure date to re-enter the ROK. Failure to carry and present a negative COVID-19 certificate will lead to denied boarding or re-entry denial.

-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소지자로서 재입국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국가별 방역 정책(접종증명 유효기간 만료 후 추가 접종 의무화 등)에 따라 항공기 등 탑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Boarding may be restricted even for those granted a Re-entry Permit as a holder of COVID-19 vaccination certificate, depending on each country's quarantine policies (Booster shot mandate after expiration of vaccination certificate and others).

☐ 동의함/Agree ☐ 동의하지 않음/Disagree

-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입국허가는 불허됨,

RE-ENTRY PERMISSION SHALL NOT BE ISSUED UNLESS YOU AGREE

일자Date 2022년 (year) 월(month) 일 (day)
(서명 또는 인) (signature or seal)

재입국 시 유의사항 안내 및 확인 동의서 外国人“再入境”韩国须知及知情同意书

- 아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,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7조의2에 따라 외국인등록 말소 처리됩니다.

如果不同意以下内容，不能获得韩国的“再入境许可”。如果不办理“再入境许可”手续离开韩国，其在韩外国人登记事项将依照《大韩民国出入国管理法》第三十七条之二规定被注销。

- 재입국자는 현지 출발일 전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.

PCR 음성확인서를 소지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탑승이 차단되거나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
持“再入境许可”赴韩人员须持有并提交在当地出发前48小时内完成检测并获得的新冠病毒核酸检测阴性证明。如果不持有并提交核酸检测阴性证明，将会被拒绝登机或入境。

-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확인서 소지자로서 재입국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코로나19 백신 관련 국가별 방역 정책에 따라 항공기 등 탑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即使是完成新冠疫苗全程接种的人员获得的“再入境许可”，根据其疫苗相关国家的防疫政策，也可能被拒绝乘坐飞机等交通工具。

☐ 동의함/同意 ☐ 동의하지 않음/不同意

-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입국허가는 불허됨

如果不同意，不予批准“再入境许可”申请。

日期 2022년 (年) 월 (月) 일 (日)
(서명 또는 인) (签或章)